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44
----------	-------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이수진·임미애·박지원  
안태준·소병훈·김 윤  
남인순·서미화·전진숙  
전종덕 의원(10인)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
-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
-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10조제6항)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를 “출생아동의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급아동”을 “출생아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 대하여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만, 제5항에 따라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등이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그 밖에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 및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한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 대한 이용권 지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한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 대하여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등이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그 밖에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 및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게 통지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여야 한다.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  
-----  
-----  
-----.